

대통령령 제 호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업무) ② 법 제46조제1항 제6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”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말한다. 1. ~ 1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6조(업무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<u>14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</u> <u>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</u> <u>신용조회업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991